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대　　상 : OpenWorks 4.0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아이디알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3,9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공급사"　　㈜아이디알소프트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대 상 : BlueWorks 2.0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아이디알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6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공급사" ㈜아이디알소프트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대　　상 : 용인시 홈페이지 검색엔진시스템 BS21 3.0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 . 공급사 : ㈜인덱스메이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6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 . 공급사"　　㈜인덱스메이트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대　　상 : 통합인증시스템(SSO) iSIGN+ 4.0 / SS-ATH-1600 1식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펜타시큐리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4,1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30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공급사"　　펜타시큐리티㈜　　(인)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대　　상 : AI번역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아사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서비스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제공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제공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0,5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제공·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23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공급사"　　㈜아사달　(인)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대　　상 : AI검색
○ 발주기관 : 용인시청 (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아사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서비스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내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제공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제공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3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제공·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서비스제공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23일

"발주기관"　　용 인 시 장　(인)

"제조사·공급사"　　㈜아사달　(인)